

# 고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

의안번호	1157
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5. 1.  
발 의 자 : 최을석 의원 외 3인

## 1. 제정이유

-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,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고성군 경로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대상은 “노인복지법시행규칙”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으로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, 난방연료비, 기능보강 사업비,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라.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반환규정을 정함(안 제5조)
- 마.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,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~제9조)
- 바. 군수는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·보호하도록 규정함(안 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 제47조」
- 나. 집행부 사전협의 : 완료
- 다. 예산조치 : 없음
- 라. 입법예고(군의회 홈페이지 게시) : 2009. 4. 20 ~

## 4. 본문 : 덧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, 취미활동,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원대상)**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는 「노인복지법시행규칙」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**제3조(경로당 지원계획 수립)**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경로당 지원)**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1. 경로당 시설 운영비
2.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
3.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
4.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
5.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
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「고성군보조금 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5조(보조금의 반환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2.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
3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

- 제6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- ② 위원회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 주민생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1.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 학계 전문가
  2. 고성군의회 의원
  3.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이 된다.

- 제7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  2. 기타 군수의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

- 제8조(위원회 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단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
- 제9조(회의)**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,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 한다.

- 제10조(의무)** ① 군수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, 보호하여야 한다,
-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수당 등)**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「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